

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발의일자 : 2023년 7월 7일
- 발의자 : 윤영애 · 김원규 · 김재우 · 김지만 · 박소영 · 박종필
이동욱 · 이성오 · 이재숙 · 이재화 · 정일균 의원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10일

2. 제안이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지명 결정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지명위원회의 정원, 위원장 · 부위원장 ·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의사정족수·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4. 검토의견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 · 의결 사항을 변경한 것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1조제2항²⁾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.

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도시철도역의 명칭은 국토교통부의 ‘지명 업무 편람’에서 규정한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다를 사항이 아니라는 국가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, 본 조항은 지난해 12월 본 조례 개정 시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· 변경 · 폐지를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사항에서 삭제하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임.

-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원을 15명 이내로, 민간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변경하고,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과

2)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 ·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시 · 도에 시 · 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 · 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 · 군 · 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

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위원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는데, 이는 법 시행령 제88조³⁾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음.

- 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회의의 개최 요건, 회의에 대한 사전 통지와 예외규정, 서면 심의 ·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, 현행 조례 제3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, 회의 사전 통지에 대한 예외규정과 서면 심의 · 의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안 제14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4항⁴⁾과 중복되어 삭제한 것임.

3)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(시 · 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
시 · 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 · 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
2. 시 ·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)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 · 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
4)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(위원장 직무 등) ①~③ 생략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□ 종합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 -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 있고, 현행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.
 - 다만,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·변경·폐지와 관련하여 '도시철도 역명 제·개정 기준 및 절차 추진계획'을 수립하고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 후 도시철도 역명 제·개정의 대표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.
-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